

공적입양체계 안착 위한 제도개선 박차

-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4.9.) -

-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추진상황 점검 및 입양절차 개선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9일(목) 17시에 아동권리보장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과 제도개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5년 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로의 개편 이후 시행 중인 입양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과 제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부는 최근 입양절차 지연 우려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19일 예비 양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입양절차 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양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일부 보완이 이루어졌다.

< 입양절차 개선방안(3월 발표) >

- ▶ 입양 신청 방법 개선 : 등기 → 온라인 신청
- ▶ 예비양부모 기본교육 한시적 확대 : 월 2회 → 4회, 교육장소 지방으로 확대
- ▶ 가정환경조사 인력 확충 : 현 13명 → 단계적 확충
- ▶ 분과위원회 운영 개선 : 월 1회 → 2회
- ▶ 결연확인서 전달 시기 조정 : 아동과 첫만남 이후 → 이전 전달
- ▶ 법원 단계에서의 입양절차 : 정부와 법원 간 실무협의체 구성으로 업무협의
- ▶ 입양절차 진행상황 안내 : 문의 시 안내 → 온라인에서 상시 확인

이번에는 지난 대책에 더해 **결연방식** 관련하여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결연을 우선 심의하고 ▲보호조치 순으로 심의에 상정되던 것을 시설아동 등 아동 상황을 우선 고려하여 상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추가 보완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대책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행정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의 빠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절차도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상담·조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법원 및 지자체와 협력 체계 강화 ▲예비양부모 상담·교육 확대 ▲입양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입양절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향도 논의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최근 입양 절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동의 권익이 보호되는 가운데 적기에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입양정책위원회 개요
 2. 입양정책위원회 명단
 3. 국내 입양 절차 개선방안(요약)

담당 부서 <총괄>	인구아동정책관 입양정책팀	책임자	팀 장	윤장열 (044-202-355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4-202-3551)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	책임자	부 장	황정아 (02-6454-8601)
		담당자	팀 장	정미경 (02-6454-8621)



□ **위원회 개요**

- (근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
- (기능)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사항 심의 및 개별 입양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국내입양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예비 양부모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 입양 절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결연(아동-양부모 매칭),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분과위) 등
- (지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의 특별위원회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 학계전문가, 의료법률전문가, 법원행정처장 추천자, 입양 관련 학식·경험 풍부한 사람 중 장관이 임명·위촉 (임기 2년)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정책위원회) 매 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분과위원회) 개별 입양사례 심의·의결 위해 2개 분과 구성(국내입양, 국제입양), 각 분과위는 10명 이내로 구성(시행령)
- *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간주(법 제12조 제6항)
- (의결) 재적 위원의 2/3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원조직) 사무국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설치·운영

연번	분야	성명	소속·직함
1	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	학계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노충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박현선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		조소연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6	의료	전지현	강남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7	법률	최인해	법무법인 송인 변호사
8	법원행정처 추천	박근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9	정책·실무, 학식 및 경험	김성미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10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11		전세희	뿌리의 집 입양인권리옹호팀 팀장
12		홍경민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13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14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5		정필현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장

* 법적 요건순서, 성명 가나다순으로 작성

□ **현황**

- 제도 개편에 따른 초기 예비양부모 신청이 집중된 가운데, 순차적 절차 운영과 교육·조사 수행여건 제약으로 일부 속도가 더딘 상황

□ **개선방안 주요내용**

- ▶ 현 시점에서의 **주요 병목발생 요인**(예비양부모 교육, 가정조사) 해소
- ▶ 각 입양절차를 점검하여 **필수 절차는 충실히**, 행정절차는 합리적으로 개선

- ① (신청방법) 현재 등기우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신청 절차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개선,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 제고
- ② (교육확대) 입양 기본교육을 매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기회 확대('26.4월)
- ③ (조사인력 확충) 위탁기관 가정환경조사 인력의 단기인력 충원 등을 통해 일시적 대기 상황 해소(재정당국과 협의 중, '26.3월~)
- ④ (분과위 운영) 예비양부모 자격·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를 월 1회 → 2회 확대하고,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결연 우선심의, 결연 상정방식* 개선
* (기존) 보호조치 순 상정 → (개선) 시설 아동 등 아동의 상황 우선 고려 상정
- ⑤ (결연확인서) 법원에 제출할 기본서류인 양측 결연 수용의사 확인자료를 예비양부모 희망시 아동과 첫만남 이전 전달('26.4월)
- ⑥ (법원단계 입양절차) 법원 등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축하여 입양절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공유 및 개선사항 지속 논의
- ⑦ (진행상황 안내)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입양처리 단계의 투명성 강화(4월 말 오픈예정)
- ⑧ (인력 확충) 입양절차 개선에 대응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실무인력 추가 확충 추진